

# KISO

2017 Vol.28 Journal

##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주)000 성매매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 윤성옥

## 기획동향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중 세트'를 둘러싼 법 개정 논쟁 | 김현아

## 국내외 주요소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 강신욱

## 이용자섹션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  
규제와 미래 전망 | 신민수

## 해외 자율규제 소식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인터넷 포럼(GIFCT) | 권오성

## 문화시평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비즈니스 기회 | 윤은상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 KISO NEWS

# 온라인 숙박예약 업체 ‘성매매’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윤성옥 /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KISO 검색어 검증위원

<Keyword>

연관검색어, 기업, 권리침해, 의혹제기, 언론보도

## 1. 사건의 발단

여름 휴가철도 어느새 지나갔다. 대체로 우리는 일상의 고단함과 무더위를 휴가로 극복하곤 한다. 따라서 휴가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특히 숙박지 선택에 많은 공을 들인다. 숙박예약 앱이 뜨는 이유이다. 국내의 한 숙박예약 O2O(Online to Offline) 업체는 휴가철이었던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주간 360만 명이 앱을 설치 이용했다고 한다.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180만 명을 기록했고 심지어 10초에 3개꼴(7월 12일 기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sup>1)</sup>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주)○○○는 국내 대표적인 숙박예약 O2O 업체이다. 그런데 지난 3월 (주)○○○의 일부 오프라인 가맹점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되

었다. 유흥업소를 찾은 고객이 술값을 지불하면서 성매매 대금 5만원을 내면 해당 업소 종업원이 같은 건물이나 인근에 있는 직가맹점으로 손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장소로 사용됐다는 의혹이었다.<sup>2)</sup>

이에 대해 (주)○○○ 측은 일부 가맹점의 불법행위 의혹에 유감을 표시하며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매매 장소 제공을 알고 있거나 알았음에도 막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정하였다.

## 2. 심의신청

(주)○○○는 자신들의 기업명을 검색할 때 ‘○○○성매매’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어로 노출되어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해당 검색어

1) <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391>(모바일 시장 분석 서비스 앱에이프 조사결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2) <http://www.nocutnews.co.kr/news/4752324>

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주)○○○는 “해당 검색어는 일부 가맹점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며, 본사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해주었다는 주장의 기사가 보도되면서 노출되기 시작했다”면서 “해당 기사는 부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선부른 일반화와 편견을 유도한다”고 했다. 특히 검색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어로 노출되면서 사용자들이 이를 사실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 3. 심의결정과 내용

이 사건의 심의대상은 신청인 회사명의 연관검색어인 ‘성매매’이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이번 사건에서 ‘성매매’ 검색어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2017. 4. 20.). 본 사건이 연관검색어의 예외적 삭제조항(제13조 제1항)인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 아닌 자에 대한 권리침해(제3호)’<sup>3)</sup>,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관검색어 등의 검색결과 부존재 및 무관한 검색결과의 경우(제5호)’<sup>4)</sup>,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노출(제7호)’<sup>5)</sup> 등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3) 제13조(예외적 삭제)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연관검색어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3.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제13조(예외적 삭제) ①(생략)

5.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

#### 5) 제13조(예외적 삭제) ①(생략)

7.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 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여부

신청인 기업은 사업자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다만 ‘숙박업 예약서비스 사업을 하는 자로서 가맹점 숙박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됨에 방조 의혹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연관검색어가 형성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 내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고 일정기간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론화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공인은 아닐지라도 ‘언론보도와 공론화 사실 등 사실관계’를 통해 ‘공공의 이익 내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 나. 무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규정은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검색어인데 검색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검색결과 언론의 관련사실 보도가 현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연관검색어와 검색결과 사이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매매’라는 부정적 의미의 검색어이지만 검색결과 언론보도나 기사가 검색되는 만큼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다. 음란도박 등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인 정보노출 여부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에 불법정보 또는 선정적 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정보 이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색어에서 예외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경우 불법정보로서 연관검색어 등으로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언론에서 성매매 관련 사실을 적발하거나 고발하는 뉴스를 보도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즉 ‘성매매’는 불법정보의 내용을 포함한 연관검색어이지만 그 검색결과를 보면 관련사실을 고발하는 보도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여야 할 불법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4.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신청인 기업은 성매매 방조 의혹제기가 있었고 관련기사가 검색되는 만큼 ‘무관하거나 검색결과가 없는 경우’로 예외적으로 삭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성매매’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검색결과가 불법행위를 조장하기보다는 성매매 사실을 적발하거나 고발하는 뉴스이므로 삭제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도 타당하다.

그 동안 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를 통해 ①공인, 공적인 관심사가 아닌 경우 ②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은 경우로 제한하여 검색어 삭제여부를 판단해온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의 ‘사적 영역’인데다가 언론보도도 되지 않았다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우위에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가급적 검색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일반인이나 사적 영역은 최대한 보호하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기업에게 신용이나 이미지는 영업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명 앞에 ‘성매매’라는 연관검색어가 붙을 때 치명적일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해당 기업은 수백억 원대로 계획된 투자 여부가 불투명지기도 했다. 기업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면 연관검색어 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번 결정이 남긴 쟁점과 과제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가. 권리침해 주체에 대한 판단

해당 기업은 언론보도를 통해 성매매 방조 의혹을 받았다. 심의결정은 해당 기업이 공인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도된 만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과연 해당기업이 ‘공인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규정은 공인을 ‘정무직 등 공인’으로 명시함으로써 규정을 지나치게 정무직 공직자로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동안 국내 법원은 하급심 판례를 통해 국회의원<sup>6)</sup>, 시장 비서관<sup>7)</sup>, 세무공무원<sup>8)</sup>,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sup>9)</sup>, 종교지도자<sup>10)</sup>, 유명 사회운동

6) 서울지법 1992. 12. 4. 선고, 91가합82923, 서울지법 2006. 10. 13. 선고, 2006가합71378 판결.  
7) 서울지법 2006. 5. 11. 선고, 2005가합8324 판결, 서울고법 2007. 1. 24. 선고, 2006나56918 판결.  
8) 서울지법 2004. 6. 30. 선고 2004가합7045 판결, 서울고법 2004. 12. 28. 선고, 2004나49923 판결.

가<sup>11)</sup>, 앵커출신의 방송사 차장<sup>12)</sup>이나 앵커출신의 유명 방송인<sup>13)</sup>, 연예인<sup>14)</sup> 등을 공인으로 인정해왔다.<sup>15)</sup> 기업이 ‘정무직 등 공직자’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의 기업은 누가 봐도 공인에 해당한다. 앞선 사례에서 법원은 수십만 명의 신도를 가진 종교인도 공적 인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지닌 기업을 공인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책규정을 지나치게 명문 그대로 좁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책규정은 공인을 ‘정무직 등 공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공인’의 다양한 범주를 대부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공인’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다를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예외적으로만 검색어를 삭제해야 하는데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당연히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공인의 권리를 더 보호하고 여론왜곡이나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소한 그 동안 축적된 법원 판례를 통해 국내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공인 기준을 제시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기업이라고 하여 모두 공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이라든지 ‘가입자 수십만 이상으로 경제거래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기업’이라든지 최소한의 기준들이 가능할 수 있다.

#### 나. 범죄행위에 대한 단정적 표현과 검색어의 기능

정책규정의 취지는 ‘검색어 삭제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검색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검색어 기능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를 위한 편리한 서비스’라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업자가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에서 무한정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검색어는 마치 신문 기사에서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본문을 통해 자세히 읽지 않으면 진실

9) 서울지법 2006. 11. 8. 선고, 2005가합90013 판결. 이 경우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공적 인물’ 또는 ‘공인’이라는 표현은 적시하지 않았으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산하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인 원고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그 보수 역시 수당의 형식으로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할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한 정도 폭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10) “신도수가 수십만에 이르는 세계정교의 창시자이자 대표자로서 그 막대한 영향력에 비추어 통상인보다 더 많은 정보가 언론의 취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신청인으로서 특정 종교 혹은 특정 종교인의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언론의 취재가 있을 경우, 그 언론기능의 공공성에 비추어 신청인의 공적 활동이 취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생활의 상당 부분까지 취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용인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지법 1999. 2. 2. 선고, 98카합4070 판결, 서울지법 2001. 12. 19. 선고, 2001가합8399 판결.

11) 서울고법 1996. 6. 18. 선고, 97나282 판결.

12) 서울지법 1997. 9. 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서울고법 1998. 4. 16. 선고, 97나47141 판결.

13) 서울고법 2001. 5. 31. 선고, 2000나11081 판결.

14) 서울고법 1996. 9. 20. 선고, 96나24196 판결, 서울지법 2001. 4. 25. 선고, 2000가합64132 판결, 서울지법 2001. 12. 19. 2001가합8399 판결, 서울고법 2004. 10. 12. 선고, 2003나55334 판결 등.

15) 열거한 사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공인’여부를 판단한 경우이다. 그밖에 정치인, 법조인, 대통령 친인척 등 공인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공적 관심사나 공공의 이익으로 접근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나 사실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한다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다소 보수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 즉 검색어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보다 개인의 권리 보호에 보다 무게를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수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특정 기업명 앞에 ‘성매매’라는 불법행위를 의미하는 검색어가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당시 검색결과를 보면 아직 논란중이고 기업이 해명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검색결과를 꼼꼼히 읽어보지는 않는다. 검색어만 보고 일반인들은 해당 기업이 성매매와 관련 있다고 단정지을 수도 있다.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 살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언론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내연녀 살해 30대, 죄책감 자수’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언론사는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동일하게 경찰의 보도자료를 기초로 했지만 제목에서 ‘내연녀’라는 단정적인 표현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16)</sup> 따라서 검색어가 ‘포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 ‘제목’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불법행위를 단정적으로 의미하는 경우 검색어를 어떻게 처리할지 보수적인 기준이나 보완적인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정적 표현을 중화하는 방식이나 단정적 검색어와 동시에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방식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 5. 나가며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특성상 완전히 진실로 입증된 정보만 유통되지는 않는다. 어쩌면 인터넷의 장점은 진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지도 모른다.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에서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의혹제기는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검색어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는 균형적 접근이 대단히 중요하다. 공인 범주에서도 층위를 달리하는 권리주체의 지위, 권리 침해와 피해의 정도, 불법이나 범죄행위와의 연관성 등을 보다 균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사안의 심의결정은 검색어의 예외적 삭제 적용받지는 못했다. ‘공적인 관심사’와 ‘언론보도 여부’라는 기존의 규칙 적용에 있어 심의결정 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 다행히 기업은 ‘성매매 의혹’이라는 불명예와 신뢰도 추락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건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만약 당시 기업이 이 일로 인해 투자가 무산되고 경영에 치명타를 입고 망했다면 그리고 추후에 무죄가 입증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고 남겨진 과제가 많다. KISO JOURNAL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13. 판결 2006가합88420.

#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종 세트'를 둘러싼 법 개정 논쟁

김현아 / 이데일리 IT과학팀 팀장

<Keyword>

KISO, 임시조치, 임시조치 제도 개선, 자율규제, 표현의 자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터넷 정책은 달라져 왔다.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가 도입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이지만, 실명제 대상 사이트가 확대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때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를 공약으로 걸었지만, 눈에 띄는 조치는 없었다. 다만, 국민이 공직자나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경우가 22건(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4건 포함 형사소송 18건)이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정책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인터넷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인터넷을 포함한 방송통신 정책에서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최대 과제로 삼은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8월 1일 취임식에서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논의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 확대라는 범주를 넘어 언론 자유 확대, 민주주의 진전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시조치 제도나 명예훼손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인터넷상의 허위·비방 정보 유통을 증가시키고 이로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인격권 침해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여전하다.

## ◇ 임시조치 개선 어떻게 해야 할까

네이버,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들은 '임시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시조치 제도란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등의 게시글에 대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포털들이 이

를 삭제처리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누구든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무조건 해당 정보가 30일 동안 차단(블라인드)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게시 정보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4대 인터넷 포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차단한 인터넷 게시물의 건수는 82만여 건에 이르며, 2008년 대비 2012년의 인터넷 게시물 차단 건수는 300% 가깝게 폭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정보 게시자와 차단 요청자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높이자는 논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임시조치 제도를 바꾸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두 개나 발의돼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 법안은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의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조정을 하도록 했다.

유승희 의원안 역시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게 했고, 이 때 자신이 게재한 정보가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임을 소명할 경우 포털은 30일 이내에 차단 조치된 정보에 대한 해제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는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해 매년 2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고 ▲방통위는 보고받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게 했다.

또한 ▲포털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한 인터넷 게시 정보에 대해선 임의로 해당 정보를 차단하거나 차단해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선 차단 요청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두 법안 모두 부족했던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늘린 법안이나, 해법은 다소 차이가 난다.

정부 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를 설치해 갈등조정이라는 준사법적인 기능을 부여하려 하는 반면, 유승희 의원 법안은 그런 언급 없이 포털이 차단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투명성에 초점을 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사이버분쟁조정기구’ 설립을 공약화한 만큼, 국회 논의 시 이 부분이 추가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하고,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기구를 개편한 ‘사이버분쟁조정기구’의 심의·결정 및 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게시를 허용한다는 걸 공약화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포털이 임시조치할 경우 법적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에 비해 정보 게재자에게 유리한 조항이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포털 등의 임시조치 남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문제는 해결했지만, 자칫 인터넷상의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인터넷 포털 정책 변화>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정부정책	<b>인터넷규제 제도화</b> - 공직선거법: 인터넷연론사 개념 신설(2003) - 신문법: 인터넷신문규정(2005) - 언론중재법: 인터넷신문을 언론중재의 개념으로 포함(2005) - 포털뉴스가이드라인(문화관광부)(2007)	<b>신문법(2009)</b> - 포털의 기사배열 원칙 공개 - 포털사의 임의적 기사 제목 및 내용 수정 금지 <b>언론중재법(2011)</b> - 포털뉴스를 언론중재 대상으로 포함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방송통신위원회)(2008)	<b>포털 가이드라인(2011)</b> - 검색원칙공개 - 불공정행위 금지 - 검색과 광고 구분 의무 <b>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2014)</b> -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안 - 이용자 후생제고 - 관련사업자 상생지원
인터넷포털 자율규제	- 네이트: 미디어책임위원회 구성(2005.5) - 다음: 열린사용자위원회 구성(2005.9) - 네이버:이용자위원회 구성(2007.1)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출범(2009.3)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2012.2)	- 네이버 '인터넷상생협력방안 발표(2013.7):공정위와의 동의의결 합의에 반영 -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2015.10) - 카카오 RUBICS 도입(2015.6) - 네이버 AIRS도입(2017.3)

(출처: 공주대 영상학과 배진아 교수, 'ICT 미디어 기업의 공적책무와 자율규제' 논문)

### ◇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확대, 인터넷실명제 잔재 완전폐지 추진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쌍둥이 법안처럼 추진되는 게 바로 ‘형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게 하고, 징역형을 폐지하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전체 형사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명예훼손 관련 고소 증가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세월호 사건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제기하는 전단을 배포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례, 부산에서 비선실세 의혹 등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돌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 상습적으로 대통령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인터넷 글 등에 대한 명예훼손죄 남용을 막기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하겠다는데,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에 의한 자율규제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네티즌의 게시글에 대한 자기검열 등으로 위축효과를 주어 인터넷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쓰였던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아직도 잔존하고 하는 개별법(공직선거법, 게임산업법 등)상의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 자유로운 인터넷상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 ◇ 늘어나는 표현의 자유, 자율규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

도다. 위헌 판결이 나와 폐지됐지만 공직선거법이나 게임산업법 등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실명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지나친 비난이나 욕설, 인신공격이 포털 댓글에서 사라진 건 아니다.

하지만 ▲개별법령에 잔존하는 실명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대폭 완화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법 3종 세트가 한꺼번에 진행된다면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된다.

바람직한 인터넷 예절에 대한 교육과 선플달기 운동 외에 제도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인터넷에 대한 내용 규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하고 있다.

KISO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개별 기업 단위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사회적 책무, 사회적 요구, 사회적 위험의 방어를 위해 설립된 자율규제기구다. 인터넷 게시물 관리의 규칙과 질서 정립을 목적으로 2009년 출범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저널리즘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육성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구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목적으로 2015년 출범했다.

즉 KISO는 불법 의심 게시물 심의 업무를,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제휴 심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 대해 상당 부분 법적 규제 대신 자율규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인터넷의 혁신성때문에 오프라인의 법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한계적이고, 우리나라만 법적 규제 중심으로 운영할 경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

업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법적 규제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을 담지 못해 되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자율규제를 도입한 이유다.

하지만, 다소 부족했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가짜뉴스나 명예훼손 글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자율규제 시스템에 대한 중간 평가와 함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자율규제 역시 규제의 부재가 아니라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규제를 이끌어 가는 것인 만큼, 미래 지향적인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향한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역할분담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는 6월 29일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새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9개 ICT·미디어 학계 연합 특별 세미나에 참석해 “자율규제라는 말은 ‘(피규제자인)기업 스스로 규제한다’거나, ‘비규제·탈규제’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공동 규제시스템을 의미한다”며 “KISO가 공동 자율규제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의 포털 자율규제는 법적·행정적 규제를 피하려고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하는데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규제기구와 협력해 공동 규제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 이는 큰 틀의 공적 책무를 정한 뒤 자율규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인터넷 내용 규제에 대해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자율규제 활동이 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KISO JOURNAL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관련 주요 내용 및 규제 방향

강신욱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Keyword>

온라인 광고, 금지행위, 플로팅 광고, 자율규제

##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온라인 광고규제 도입

2016.12.30.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정한 형태의 광고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포섭되었고 그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신설되어 2017. 1. 31.부터 시행 중에 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각 개별법령에서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고 있었고「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가 규제되고 있었으나, 기존의 규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에 그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온라인 광고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온라인 광고 관련 금지행위는 두가지로 첫째는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이며(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5)), 둘째는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거나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이다(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6)).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자는 사실조사(법 제51조) 및 시정명령(법 제52조)의 대상이 되고 사실조사를 방해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내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법 제52조의2제1항, 제104조 제1항),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법 제53조 제1항) 내지 형사처벌의 대상(법 제99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광고 형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직 위 금지행위들에 대한 선례가 축적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인바 이하에서는 각 금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2. 각 금지행위에 대한 검토

### 가.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5)

법령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등).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 처분이 가해지는바, 금지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차적으로 문언에 충실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5)는 부당하게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와 광고가 아닌 정보의 구분과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경우 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부당성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입법목적

에 맞춰 구체적인 사례에서 행위의 동기, 행위의 유형, 타 광고와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sup>1)</sup>. 따라서 편집상의 실수 내지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하여 광고가 다른 정보를 가리게 될 경우 부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 광고의 형식이 기사 형태를 띠고 있고 광고임을 알리는 표시가 없으며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광고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의 광고라면 부당하게 오인시킬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지행위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 삽입 등을 통하여 이용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나.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6)

법 시행령 [별표4] 제5호 사목 6)은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삭제버튼이 없거나 마우스 접촉시 확장되는 등의 플로팅광고(Floating ad)를 규제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1) 예컨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입법목적에 맞춰 그 부당성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의도나 목적은 사업활동 방해의 경위 및 동기,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태양, 관련 시장의 특성, 사업활동 방해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등).

위 금지행위 판단 요소 중 다른 정보를 가리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플로팅 광고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시 플로팅 광고의 형태가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지 여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의 동기, 타 광고유형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삭제가 어렵거나, 타 광고에 비해 지나치게 삭제 방법이 복잡하거나 제한적이라면 이는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확장된 광고 화면에서만 삭제가 가능하다든가, [x]버튼과 close 버튼이 함께 표시되어 있고 close 버튼만 광고 삭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광고 삭제 버튼이 희미하거나 매우 작아 쉽게 발견할 수 없을 경우 이는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물론 삭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위 금지행위에 포섭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적어도 일반적인 이용자 입장에서 삭제 버튼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면 손쉽게 플로팅 광고가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온라인광고협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플로팅 광고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여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마치며 - 자율규제의 강화

한국온라인광고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활성화 되어 있고, 해외 또한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온라인 광고 형태를 금지행위로 포섭한 시행령 개정은 다소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자율규제를 통한 한계로 인하여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당국의 판단 하에서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가 도입된 것이라면, 그 규제 도입의 정당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광고 방식에 대한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과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한다는 점 사이의 미묘한 갈등 관계를 풀어내기에는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업자들이 광고 형태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되 자율 규제 기능 강화를 통한 자기 정화 능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SO JOURNAL

# IC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은행, 규제와 미래 전망

신민수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Keyword>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금융 규제

## 1. 핀테크 열풍과 기대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4월 3일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케이뱅크는 25년 만에 국내에서 새롭게 탄생한 제1금융권 기관으로, 최신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지점 없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7월에는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하는 등 핀테크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금융(Finance)과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탄생한 핀테크(Fintech)가 전통적인 금융 산업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핀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찾기 어렵다. 답하는 사람에 따라 인터넷 은행이, 애플페이 등 결제 서비스가, 혹은 비트코인이 핀테크라고 답한다. 그런데 핀테크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든 간에 핀테크에 대한 정의들에 공통점이 있다. 그 것은 핀테크가 기술을 이용하여 금융시스템을 보다 효

율적으로 만드는 기업들로 이루어진 산업이라는 점이다. 핀테크가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하여 단순히 기술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 넓게는 정보 혁명, 그리고 더 나아가 네트워크 혁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핀테크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금융 산업을 해체하고 금융 서비스를 네트워크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핀테크는 금융 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금융 서비스의 제공 형태 측면에서 금융 기관이 개발하고 이를 고객이 수용하던 이전 단계에서 벗어나 금융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 금융 거래에서의 주도권이 금융 기관에서 고객들로 이전된다. 둘째, 금융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다양한 금융 거래 매개자가 등장함으로써 인해 전통적인 금융 기관의 역할이 축소된다. 이외에도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통해 어느 국가에서든 금융 거래를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 2.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의미와 과제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금융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으며,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산업은 전통적 금융 강국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 들어 호주, 중국, 이스라엘 등이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미국은 엄격하지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최초로 도입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의 제약 없이 테스트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핀테크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 금융사와의 경쟁을 통해 금융 혁신을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융 위원회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핀테크에 대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핀테크 산업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자금과 기술력에서 열세이며, 금융 시스템 관리의 특성상 사업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2015)에서 밝힌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필요성은 세계 최고 수준인 IT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향상되고, 금리·수수료 등 서비스를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비대면 거래 증가 추세 속에 경쟁을 촉진하며 은행권의

보수적 영업 행태 혁신의 자극제 역할을 통한 은행산업 경쟁 촉진, 금융회사·ICT기업·핀테크 업체 등이 제휴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및 신 시장 개척을 통한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 등이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온라인 증권회사가 도입된 증권 산업의 사례를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만으로는 현재 기대하는 금융 산업의 변화를 이끌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적 시각의 해소를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복잡한 주주 구성으로 인한 ICT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한계에 대한 우려와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약화 및 금융 소비자 보호의 취약성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 의도대로 시장에서의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며 일정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러한 과제간의 관계 복잡성(complexity) 수준이 높아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은행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가와 기존 은행의 지배력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공급자와 수요자간 협상형 전략이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그러한 트렌드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점 등이다.

## 3.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한 주요 규제 방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행위, 마케팅 활동, 민원처리 등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영위하는 은행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정의하는 경우 오프라인 사무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진다. 미국의 경우 통화감독청(OCC)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지침에 1개 이상의 물리적 지점 설치 등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무점포 형태였으나, 이후 물리적 오프라인 점포를 보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오프라인 사무공간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창의성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해외 주요 국가의 은산분리 규제 사례를 보면, 각국의 산업화 과정 및 자본 시장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은산분리 규제는 거대한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여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거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나,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유인 약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은산분리에 관한 기본적인 쟁점은 은행법상 은산분리 조항을 완화해야 한다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완화해야 하는 논거는 무엇인지?,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같은 소위 재벌의 진입도 허용할 것인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조항을 완화한다면, 별도의 지분보유 한도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비 금융주력자의 정의를

수정할 것인지?, 완화한다면 그 수준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이다. 은산분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법에 은행 자금의 대주주에 대한 공여 방지, 발행 주식의 취득 한도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에 대한 근거 조항(35조 2, 48조 2)을 원용할 수 있겠으나, 그 보다는 사회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주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 리스크 전이 방지, 건전성 확보 등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관련된 사후적 보완 장치 역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자산 건전성 규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규율체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지, 별도의 독립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동일한 규제체계의 경우 규율체계의 일관성이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방지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을 갖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갖는 고유 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는 미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독립적인 규율체계의 경우 탄력적 규율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영업활동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일반은행과의 차별성이 오히려 정책의 일관성을 약화시킨다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4. 핀테크 산업의 미래

새로운 틈새시장은 규제 환경 및 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시장의 주변부 영역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가 진입하는 경우, 규제당국에서는 정책 판단에 따라 진입을 용



인, 촉진, 혹은 제한 할 수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규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적절한 동기의 제공과 효율성 달성의 문제이다. 우선 ‘해당 산업이 규제를 통하여 신규 진입자의 진입을 유인할 상황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다’이면 신규 진입자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이윤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의 도입이 기존의 지배적 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신규 진입자를 끌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판단 역시 필요로 한다. 규제의 도입 못지않게 규제의 적용 의지 및 지속 기간에 대한 잠재적 신규 사업자들의 믿음도 중요하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 소비자 전환비용의 하락을 통한 은행 산업 혁신과 망 외부성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 플랫폼의 발달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어떠한 범위의 규제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 기관들의 조직 문화가 개선되어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기존 금융 기관과 제휴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규제의 형태가 열거 주의를 벗어나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빅 데이터, 보안 기술, 클라우드 등 기술적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기술 개발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하기 어려움으로, 핀테크 스타트업과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핀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KISO JOURNAL

<참고 문헌>

금융위원회(2015),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인터넷 포럼(GIFCT)

권오성 / 한겨레신문 기자

### 〈Keyword〉

국제 인터넷 포럼, 테러리즘 대응, 인터넷 자율규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지난 21일, 유엔 총회에선 이례적인 부속 모임이 하나 열렸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의 총리가 참여한 이 모임의 이름은 ‘테러리스트의 인터넷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상 회의’(Leaders Meeting on Preventing Terrorist Use of the Internet)였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자리에서 발언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기업을 압박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업계는 테러리즘 관련 콘텐츠를 발견하고 삭제하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하철 사제폭탄 테러를 포함해 영국이 수도 런던에서 최근 모두 다섯 차례의 경악할 만한 테러 공격을 당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영국 정부는 이슬람국가(ISIS)를 비롯한 테러리즘 세력이 인터넷을 활용해 극단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젊은이를 유혹하는 것이 이런 테러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영국뿐만 아니라 참여 국가 대부분의 정상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기업의 보다 큰 책임과 대응을 강조했다. 각국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급을 양분으로 자라나는 자생적인 테러리스트, 이른바 ‘고독한 늑대’의 테러 위

협에 대응해야 할 큰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유튜브)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지난 6월 자율적인 대응 기구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인터넷 포럼’(Global Internet Forum to Counter Terrorism, 이하 테러 대응 포럼)을 창설했다. 이용 인구 20억에 육박하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미국 실리콘밸리 태생의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넓고 깊은 만큼 테러리스트 그룹에게도 중요한 선전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 테러와 비교적 무관하다고 여겨진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5년 트위터를 매개로 해서 한 고등학생이 이슬람국가에 가입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던진 바 있다.

테러리즘 확산의 공포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정보의 전파를 막기 위해 보다 강제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의 도입을 서두르지 못하는 배경에는,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시민 권리와 서로 긴장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정 표현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표현에 대한 차별이라는 시

민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이런 규정은 ‘무엇을 어디까지 금지할 것이냐’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좀처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프로파간다를 제거한다는 명분은 합당하게 보이지만, 코란(이슬람교 경전)의 해석에 대한 동영상이나 모호하게 무슬림의 단결을 호소하는 글도 함께 삭제될 가능성도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다. 또한 테러리스트를 효과적으로 색출하기 위한 기술은 다른 이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도 얼마든지 응용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 기업의 자발적인 대응이 정책적으로 더 선호된다.

동시에 자율 정책은 두 가지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첫째,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기업 내부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한 통제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사 서비스의 여러 영역에 대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외부에 비밀로 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표현

물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 노하우는 테러리즘 콘텐츠를 색출하는데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체 알고리즘을 적절히 수정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도입·집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외부에선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째,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전파는 초와분 단위로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법이나 제도를 통한 이런 콘텐츠에 대한 대응은 행정 당국과 민간 기업, 대중의 참여 등을 중요한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여러 행위자가 효력의 전개에 개입하는 만큼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플랫폼 기업의 직접 개입은 전자적인 속도의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바탕에서 테러 대응 포럼의 멤버들은 창립에 대한 알림 문서에서 “테러리즘의 전파와 폭력적 극단주의가 심각한 세계적 문제”임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sup>1)</sup>

〈표〉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국제 인터넷 포럼의 주요 정책

정책	내용
기술적 해법 (Technological S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들은 기술적인 해법을 정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li> <li>• 회원사의 첫 공동작업인 ‘업계 공유 해시 데이터베이스(Shared Industry Hash Database)’ 확대</li> <li>• (테러리즘) 콘텐츠 탐지 및 분류를 위한 새로운 기계학습(머신러닝) 기술의 교환</li> </ul>
연구 (Resea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러리즘에 대한) 반대 담론(counter-speech) 증진과 미래의 기술적/정책적 결정을 위한 연구 위탁</li> </ul>
지식 공유 (Knowledge-shar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시민사회, 학계의 반테러 전문가와 지식 공유 네트워크 구축</li> <li>• 유엔 대테러사무국(UN CTED), ‘평화를 위한 정보기술(ICT4Peace Initiative)’ 등 기구와 파트너십 구성</li> <li>• 중소기업과 협력 관계 구축 및 기술지원</li> <li>•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반협오발언연맹(ADL), 글로벌네트워크이니셔티브(GNI) 등과 협력해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 테러 콘텐츠를 상대하는 모범 대응책 연구</li> <li>• 각 회원사가 운영 중인 반대 담론(counterspeech) 캠페인의 경험 공유,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책 개발</li> </ul>

1) 트위터 블로그.

[https://blog.twitter.com/official/en\\_us/topics/company/2017/Global-Internet-Forum-to-Counter-Terrorism.html](https://blog.twitter.com/official/en_us/topics/company/2017/Global-Internet-Forum-to-Counter-Terrorism.html)

이와 함께 위 〈표〉와 같은 대응을 주요 골자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그룹의 프로파간다 기법이 수시로 변하는 만큼 대응도 이에 맞추어 앞으로 계속적으로 변화·진화하리라고 덧붙여 두었다.

제안된 정책 가운데 두 가지는 부연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기술적 해법 가운데 ‘업계 공유 해시 데이터베이스’(Shared Industry Hash Database)는 이번 테러 대응 포럼 창립에 앞서 회원사들이 지난해 12월에 이미 실행에 옮긴 가장 첫 번째 공동 대응책이다.<sup>2)</sup> 여기서 말하는 “해시”란 ‘독특한 디지털 지문’을 말한다. 예컨대 테러리스트가 올린 신병 모집 비디오와 같은 곳에 남겨져 있는 특이한 흔적 같은 것을 말한다. 해시 데이터베이스란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서로 공유하는 틀이다. 이를 통해 전체 회원사가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지식 공유에서 인터넷 기업이 운영 중인 테러리즘에 대한 반대 담론(counterspeech) 캠페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유튜브의 ‘변화를 위한 제작자’(Creators for Change), 직소(Jigsaw)의 ‘다른 방향의 접근법’(Redirected method), 페이스북의 피투피와 오시시아이(P2P and OCCI),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대화연구소(ISD)와 협업한 카운터-내러티브 온 Bing(counter-narrative on Bing), 트위터의 국제 비정부기구 훈련 프로그램(global NGO training programme) 등이다.

인터넷 기업의 자율적인 대응이 강점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기에 너무 의존하는 대응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판단

이 모호한 회색지대에 존재하는 콘텐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억압 가능성은 앞서 소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들 기업의 이런 콘텐츠 규제책을 주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 의존하고 있는 바가 크다.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은 외연상의 차이를 주로 학습하기 때문에 의미에 의한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는 데 약점을 보인다. 예컨대 테러리스트의 잔인한 처형 동영상과 인권단체의 이런 처형을 규탄하는 동영상은 기계의 눈에는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또한 최근 테러리스트 그룹이 신입을 모집하는 데에 보안이 보다 철저한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얼마든지 이런 대책을 우회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실효가 떨어지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테러리즘 공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인 한국에서 이런 테러 대응 노력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국가가 지난해 한국을 테러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것과 고등학생의 이 단체 가입 사례 등을 보았을 때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테러 대응 자율기구의 활동은 테러 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문제 콘텐츠에 대한 자율 대응, 예컨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한 참고로서도 가치를 지닌다. 테러 대응 포럼의 향후 활동과 성과 및 한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KISO JOURNAL

2) 구글 블로그.

<https://www.blog.google/topics/google-europe/partnering-help-curb-spread-terrorist-content-online/>

#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비즈니스 기회

윤은상 /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팩토리(CAF) 대표

〈Keyword〉  
가상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 비즈니스 블록체인

<b>제 목</b>	비즈니스 블록체인 (탈중앙화 기술이 앞당긴 인터넷 혁명과 비즈니스 기회)		
<b>저 자</b>	윌리엄 무가야	<b>역 자</b>	박지훈, 류희원
<b>출판사</b>	한빛미디어	<b>출간일</b>	2017년 5월 2일

가상화폐.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념도 생소한 존재가 황금알을 낳는 유망한 투자처로 혜성처럼 등장하였다. 1년에 수십배의 “투자 수익”을 기록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일부에서 투자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와 은행들에서 쏟아지는 끊임없는 경고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거래금지 혹은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자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락하거나 해킹사건이 벌어지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하는 등 혼란의 과정을 지나고 있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가상화폐를 주제로 한 많은 서적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비즈니스 블록체인”의 저자인 “윌리엄 무가야

(William Mougayar)”는 새로운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먼저 그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현재의 혼란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본다. 가상화폐의 미래 가치가 기존의 경제 사회적 구조를 바꿔 놓을 정도로 대단할 것이라는 기대가 투자자들의 기대를 끌어 모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미래가 기존의 경제 사회적 구조에 막혀 쉽사리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론이 교차하면서 치뤄야 하는 과도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가야는 가상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의 사업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즉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으로 이를 수 있는 많은 결과물의 하나일 뿐으로 더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의 기술 잠재력에 있다는 주장을 펴으로써 가상화폐가 야기한 혼란

의 문제를 살짝 빗겨간다. 더 나아가 블록체 인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현재”의 여러가지 문제점들 보다는 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이를 수 있는 “새로운” 다양한 사업적 기회들을 강조한다. 블록체인기술의 가정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기존의 구조나 혹은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접근해야 제대로 된 기술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무가야는 블록체인기술의 탈중앙적 성격에 집중한다. P2P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컴퓨팅리소스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기술은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개인간에 발생하는 (금전적인 것을 포함한) 거래내역의 기록(블록)을 어느 중앙에 위치한 컴퓨터에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여 컴퓨터들에 공개하고 새로운 거래내역 발생시에 블록들을 서로 인증하게 하는 해시(hash)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실을 모든 참여 컴퓨터들에서 업데이트한다. 이들 참여 컴퓨터에 공개된 거래의 사실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개정보"가 되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신뢰구축의 근본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거래정보를 갖고 서로 인증함으로써 해당정보가 "옳다"라고 증명하는 새로운 구조의 신뢰방식인 것이다. 만일 해커가 거래내용의 소유권자를 바꾸고자 할 경우 해당내용이 기록된 모든 컴퓨터의 내용을 동시에 바꿔야 하는데, 수십, 수백만대의 참여 컴퓨터들의 인증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즉 블록체인에서의 신뢰구축은 기존의 중앙컴퓨팅 방식에서 사용해온 높은 성벽을 (방화벽과 같은) 이용한 수세적 방식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참여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와 상호인증기술을 이용한

탈중앙적이며 한편으로는 공세적 방식에 기반한다.

이같은 블록체인의 탈중앙적 성격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구조와 필연적인 갈등을 야기한다. 거래라는 것은 "가치의 이동"인데, 이 가치이동 사실에 대한 인증과 보관, 보장 등을 그 동안은 정부나 은행과 같이 공신력을 법적이나 사실적으로 획득한 기관들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등장은 이러한 기능들을 네트워크 자체로 이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기술의 미래적 잠재력과 현실의 충돌이다.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은 결제 처리 속도 향상, 중개자로 인한 업무 지연 근절, 신원 및 평판 즉시 조회, 승인 없이 주어지는 접근 권한 증가, 오버헤드 없는 수평적 구조, 네트워크 내 신뢰 구축, 공격에 대한 회복력, 중앙장애점 소멸, 합의에 의한 거버넌스 등 거대한 기술적인 잠재력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사업가들과 기술개발자들은 끝없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역설한다. 그 예로서 은행 없는 बैं킹, 중앙기구의 직인 없는 소유권 이전, 이베이없는 전자상거래, 드롭박스 없는 컴퓨터 저장소, 우버없는 교통 운송 서비스, 구글없는 온라인 신원 인증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무가야는 가상화폐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투자의 광풍은 지엽적 현상이라고 치부하면서 그야말로 전체 판을 바꾸는 정치, 경제, 사회적 잠재력 (disruptive technology)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번역서에는 Disruptive technology를 “와해성기술”로 표현하였는데 무가야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가야는 나썸 테이럽(Nassim Nicholas Taleb)을 인용하

면서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 상황이 중앙집중화된 인증 및 결정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블록체인으로 구현될 새로운 세상은 모든 인증 및 결정 등을 탈중앙화 시킴으로써 위기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은 국경의 한계를 극복하는 진정한 세계적인 경제, 사회적 흐름을 주도할 것이란 희망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나썸 테이럽은 'Black Swan'이란 개념을 설명하면서 세계화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며 커뮤니티 중심적인 작은 단위의 활발한 생명력의 담보를 주장했었다. 무가야의 기대와는 다른 측면이다. 이는 곧 블록체인기술이 당면하고 있는 모순점이기도 하다. 기술 측면에서만 본다면 분명 전체 판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은 국가와 정부, 커뮤니티라는 지역적, 문화적, (가상이 아닌) 실제적 기반 위에서 발전해온 현재의 구조를 고려할 때 첨예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무가야는 무정부적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익명성이 음성적 거래에 주로 사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블록체인과 기존 구조 사이의 파열음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 책은 무가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의 새로운 사업적 잠재력을 조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신선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사업적인 혁신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기존의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기술과 기회를 어떻게 사업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한 점은 이 책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블록체인기술과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

적 구조가 충돌하는 측면에 대한 깊은 고찰이 부족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진정한 한계를 가늠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실 블록체인으로 불리우는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의 수많은 기술들의 새로운 결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 동안 수많은 기술들이 세상을 구조적으로 바꿀 것처럼 등장했지만 많은 경우에 기존의 사회적 구조와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거나 심지어는 사라져왔다. 무가야는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사업적인 성공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복잡한 측면에서 현재 당면한 고난의 심도나 현실적인 극복방안에 대한 주제는 다소 피하고 있다는 인상도 준다. 물론 이러한 부문까지 담는다면 책의 두께가 수배로 커지겠지만 말이다.

이 책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를 사업적으로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사업가나 개발자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실적인 사업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주변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에 따라 다소 일방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야기하는 세상의 변화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추천할만하다. KISO JOURNAL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여 저널에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①

윤문용 /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

**Q.** 스마트폰이 등장하며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인터넷 공간은 한편으로 악성댓글과 공격적 게시글이 범람하는 어두운 역기능의 공간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지성과 신속한 정보교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긍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과 긍정적 측면은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우리 인터넷 문화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변화를 위한 방안이나 또는 대안이 있을까요?

**A.**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자체가 별도의 공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생활 공간화, 일상화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역기능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글자화되고 한곳에서 응축되어 때로는 그 역기능이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이미 2000년대 초반, 아니 그 이전에 PC통신 시절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어떤 인위적인 행위로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쉽

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상에서와 같이 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도적으로 다른 인위적인 무엇인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정원 댓글사건 등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의 인위적인 조작 등에 있어서는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도 과거 구태시절에 횡행하던 자금을 동원해 관제 데모를 하는 등의 일들이 인터넷상에서 국가기관, 특히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악용된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정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여론 조작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 또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시도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이러한 문제의 경우 포털의 알고리즘, 포털 등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포털의 자회사였던 회사가 이를 악용하여 마케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바를 통해 인위적으로 홍보를 하는 행위는 사실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포털이 알고리즘을 강화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 제품을 비판하는 것은 사법적 규제의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Q**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정치인 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권력과 권력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글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삭제 요청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KISO에서 해당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ISO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의 피해보다 공익적 관점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삭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 공익, 공적 관심사 등과 관계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네이버 ‘노출제의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나 KISO의 심의결정 현황을 보면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종교단체 등이 주요 삭제 요청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요청에 대해서 철저하게 판결문이나 수사기관의 최종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법률상 국가기관들로서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인터넷 포털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비공

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잊혀질 권리의 범주와 범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 공식적인 합의를 이루거나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권력자들의 연관검색어나 실시간검색어 등을 삭제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삭제 요청과 삭제 행위에 대해서 공인들은 실명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두루뭉술하고 모든게 감춰진 KISO와 업체만을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보다 투명한 보고서가 발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Q**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대해 최대한 삭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청소년 유해어가 등장하거나, 공인이 아닌 일반인의 명예훼손성 검색어가 등장하는 등의 여러 사안이 있을 수 있어 최소한의 현실적인 제어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A**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부적절한 검색어가 등장하는 것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검색어가 제외되었는지 공개되지 않는 한 결국 포털이 아젠다 세팅을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회색 영역 요컨대 연예인을 지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급 효과를 봤을 때 연예인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

문입니다.

더 나아가, 포털이 여론과 언론사를 쉽게 조정가능하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실시간에 무엇이 논의되는지를 보여줄 필요는 없고, 현재 시간대별 토픽과 같은 방식으로 이미 시간이 지난 뒤 어떠한 것이 많이 검색되었는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컨대, 너무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은 여론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혹은 KISO 심의 사례 등의 데이터 및 실명 공개를 요청하셨는데 삭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삭제한 데이터를 다시 공개하는 것은 2차 명예훼손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KISO 심의 사례의 대부분은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이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 회복에 가까우므로 이를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설령 삭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인에 대한 평가는 KISO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앞서 설명하였듯이 그들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금검 서비스를 폐지하자는 제 입장에서는 2차 피해를 검토해 본적이 없으나, 당장이 아니라 추후에 이를 공개할 경우에 과연 이러

한 피해가 많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Q.** 한편 국가도 인터넷의 순기능 활성화와 역기능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해외 선진국을 살펴보면,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다기 보다 각 국가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규율방식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국가 주도형 공적규제 제도가 내용규제를 주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적 경험, 한국적 특수성 등과 세계적 내용규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규율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A.** 현재수준의 사후규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기관의 인적 구성 방법이나, 회의 공개 방식, 결정기준 및 결과의 투명성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과 속기록 등의 공개를 통해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알리고, 시민사회 혹은 국회는 규제기관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 심의, 권력형 심의로 흐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겠지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준의 사후 관리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적자원으로 운영되는 것은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의 자율규제로서는 해외의 사업자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규제 기구에 의해, 이용자 표현물이 삭제되거나 제재당하는 것

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행 제도의 정비, 폐지 또는 이외의 방법 등)

**A.** 공적규제는 잘못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 및 제도 전반의 개선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영 재원은 공적재원으로 운영하되, 심의위원 구성이나 추천 방안은 법률로 민간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사업자의 임시조치 행위가 50만건을 돌파했다는 기사 등 임시조치에 대한 반감이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매년 꾸준히 임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게시물들에 대해서도 임시조치가 횡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와 같은 공적주장을 하는 블로그 게시물들도 제대로 된 검증없이 임시조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의 자율규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기업에서 노력하여야 할 부분은 오히려 더 강한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사후적으로는 방심위와 같은 규제기관이 있지만 이들이 사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요컨대 알려진 음란물의 업로드를 제한하거나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사전적인 규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Q.** 임시조치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 우선 각 사업자가 투명하게 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기업, 공인, 종교와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누가 어떠한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를 신청했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KISO JOURNAL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②

김경달 / 네오터치포인트 대표

**Q.** 스마트폰이 등장하며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 다양한 목소리와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는 인터넷 공간은 한편으로 악성댓글과 공격적 게시글이 범람하는 어두운 역기능의 공간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집단지성과 신속한 정보교류, 잘못된 정보에 대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긍정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공간의 역기능은 줄이고, 순기능과 긍정적 측면은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우리 인터넷 문화에서 가장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변화를 위한 방안이나 또는 대안이 있을까요?

**A.** 이용자들에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일 기회가 없다보니 이용자들이 본인도 모르게 규정 위반 행위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이용자 처벌 등 규제 위주로 나서는 것은 공포 정치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이용자 제재만으로는 인터넷 공간의 역기능을 해소하기가 어렵고, 이용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보다 중요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마련입니다. 공적 기관이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나서고 동시에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노력이 병행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정치인 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권력과 권력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글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삭제 요청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KISO에서 해당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ISO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의 피해보다 공익적 관점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삭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 공익, 공적 관심사 등과 관계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종전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원 수를 가진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 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입법안이 고려된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루머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서 촉발된 논의였는데요. 이러한 시도는 비상식적인 규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뻔한 무리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공적 기관은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질

서를 정립하는데 있어 자율적 흐름보다 인위적 규제를 우선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만큼 의견 대립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민간자율기구가 성장하여 심의 및 조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KISO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피고 의미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토대가 마련되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한편 국가도 인터넷의 순기능 활성화와 역기능 최소화에 대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라는 현상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해외 선진국을 살펴보면,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다기 보다 각 국가나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 맞게 규율방식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국가 주도형 공적규제 제도가 내용규제를 주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의 역사적 경험, 한국적 특수성 등과 세계적 내용규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규율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용자 표현물을 규율하는 방법에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규율하는 공적규제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규제, 그리고 둘의 협력과 권력의 분점을 통한 거버넌스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국적 상황에 어떠한 규율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A.** 공적 기관을 통한 심의, 규제 등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규제에 힘이 실리지 않고 공적규제의 한 방향으로만 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

니다. 공적기관은 그 특성상 임명권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 자율기구만이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중간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쪽의 공통분모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전문가 집단을 통해 사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KISO간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공조한 사례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협력을 통한 협업형 거버넌스가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규율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부터 국가 주도의 공적규제는 워낙 강하게 이뤄져오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Q.**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규제 기구에 의해 이용자 표현물이 삭제되거나 제재당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행 제도의 정비, 폐지 또는 이외의 방법 등)

**A.** 우선, 기존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되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시물 신고와 관련한 임시조치 제도의 경우에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절차라고 하기에는 아직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있게 규율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제도 정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르는데 반해 우리의 의식

및 제도는 그 속도를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신유형의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현재는 사회 전반적으로 소극적 대응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연구 인력과 많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이런 부분은 민간 자율규제 기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Q.** 알파고의 AI, 그리고 VR, AR, MR,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알고리즘, 개인방송 등 앞으로 인터넷 기반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발전 방향의 예측이 어려워 국가가 일일이 규제할 수 없음 또한 자명합니다. 신기술의 발전방향에 따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의 이슈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기 정부는 인터넷 규제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A.** AI 등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공간의 접근성,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많은 의견이 쉽게 연결되어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기술발전이라는 것이 장점도 많이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역기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정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문제로 법적 규제를 가하면 프라이버시는 지켜지지만 이용자들의 불편함은 증가합니다. 반대로 위치정보 이슈에 대해 아무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은 증가할 수 있으나 프라이버시 문제는 불가피합니다. 이렇듯 일장일단이 있으니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신기술 발전을 규제의 명분으로 사용하여 과한 규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Q.** 어떤 부분이 현실적으로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A.**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제제기를 해보자면 임시조치 제도의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현재 사업자, 정부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의 절차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AI 등 신기술이 발전하면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최근 많이 논의되는 주제이고, 공부가 필요한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초연결과 초지능 등으로 표현되는 신기술의 파도는 불가피하게 일자리 감소 등 '파괴적 혁신'을 낳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때 특정 직업이 없어지면 대체 직업들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지금은 뾰족한 대비책 없이 인간의 영역이 급속도로 기계로 대체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역할이 온전히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영역도 제법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현재는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감이 가중되는 게 사회적 이슈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차(일종의 문화지체)를 극복하고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선 우선 공공정책을 통해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Q.** 최근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절한 해결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A.** 저널리즘의 본질에는 Fact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 등 전파 확산이 손쉬운 미디어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안이 사실인양 퍼지다보니 저널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가짜뉴스 이슈는 사회적 이목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뉴스’ 포맷을 그 수단으로 삼다보니 불거진 셈인데요. 가짜뉴스 생산과 확산이 손쉬워진 시대에 저널리즘, 즉 제도화된 장치로서의 언론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널리즘’을 실현해온 언론 매체들의 신뢰 하락도 문제이겠지만, 동시에 유통 플랫폼에서도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운영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Q.**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연결성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SNS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집단에서만 소통하는 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이 이런 부분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요?

**A.** 최근 회자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 있는데요. Facebook 등 SNS에서 이용자의 성향과 취향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다보니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서비스의 알고리즘, 필터에 의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일종의 부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자칫 확정편향으로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문제점이 불거지면 다시 반대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셜 서비스에서 정보과부하 등을 토로하는 이용자들의 피로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게 그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술적 문제로 좁혀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ISO JOURNAL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③

류현정 / 조선비즈 정보과학부 부장

**Q** 인터넷 공간의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 정치인 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권력과 권력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글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삭제 요청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KISO에서 해당 게시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ISO는 전문가 집단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의 피해보다 공익적 관점과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삭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 공익, 공적 관심사 등과 관계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권력, 공익, 공적 관심사 등과 관계된 표현의 자유는 될 수 있는 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인 등 공인의 잊힐 권리 또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잊힐 권리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당장 해볼 수 있는 시도는 있습니다. 만약 공인의 요청으로 검색어, 게시물 등이 지워지는 경우 변동 내역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 변동 내역에는 (1)김 아무개 정치인이 2017년 9월 1일 3건의 내용 삭제를 요청했고, 요청이

받아 들여졌다는 정량적인 내용과 함께 (2)김 아무개 정치인이 2017년 9월 1일 A건, B건, C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고,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정성적인 내용을 함께 남겨놓는 것입니다.

1번(정량적인 것)은 일반적인 검색으로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2번(정성적인 것)은 특별한 법적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히스토리’ 보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일에 대해 훗날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하고 재조사할 수 있는 길을 남기는 것입니다.

**Q**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규제 기구에 의해 이용자 표현물이 삭제되거나 제재당하는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현행 제도의 정비, 폐지 또는 이외의 방법 등)

**A**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지털 히스토리 보관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가 이용물을 삭제하더라도 누구나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국가에 의한 부당한 삭제라면 언제나 복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놓는 것입니다.



Q. 알파고의 AI, 그리고 VR, AR, MR,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알고리즘, 개인방송 등 앞으로 인터넷 기반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발전 방향의 예측이 어려워 국가가 일일이 규제할 수 없음 또한 자명합니다.

신기술의 발전방향에 따라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등의 이슈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차기 정부는 인터넷 규제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A. 규제는 최선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포털 사이트에서 '트롬 세탁기'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포털 검색 결과는 대부분 광고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이 이 사실을 모릅니다. SNS 및 인터넷 사이트는 쿠키 기록을 수집, re-target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또는 유아용품에 관심을 가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그 기록이 남아 페이스북에서는 이와 관련된 광고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광고가 되는 메커니즘, 본인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AI, VR 등의 기술 발전으로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감시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생체 정보도 모두 수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민 스스로 이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빅 브라더'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 읽을 줄 아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정부 예산을 많이 집행해야 합니다.

Q. 네이버 광고를 보면 광고라고 표시가 안된 광고가 있고, 블로그 등에 홍보대행사 광

고가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둘 다 광고와 홍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주로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일인데요. 이용자가 탈퇴하면서 본인이 쓴 모든 게시물, 댓글을 지워달라는 일명 '전부삭제권' 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잊힐 권리를 보장하려면 지워줘야 된다는 의견과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 댓글을 지워주는 정책을 시행하면 커뮤니티 존립이 달려 지워주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이용자의 전부삭제권 요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어려운 문제입니다. 잊힐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원천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 내면 어떨까요? 전부 삭제권이 자칫 인류의 디지털 유산을 손쉽게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삭제권'보다 더 중요한 이용자 권리가 있습니다. 중소 인터넷 커뮤니티의 폐쇄나 영업 정지로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 나아가 인류의 디지털 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용자가 언제나 자신이 남긴 기록물을 아주 쉽게 다운로드받고 마이그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KISO에서 사용자 과 사업자 사이의 중재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AI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일자리가 축소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A.** 일자리가 축소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의 ‘미스매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A라는 교육을 받았는데 시대는 C라는 타입의 일을 원합니다. 미스매치에 따른 일시적인 일자리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개인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실직했을 때 개인을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교육 방식도 AI와 로봇이 상생하는 시대에 맞게 철저하게 개편해야 합니다.

**Q.** 국가가 반드시 규제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음란물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와 같은 정책이 있는데요.

**A.** 탈세나 무기거래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콘텐츠는 규제가 필요합니다. KISO JOURNAL

## KISO포럼 개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뀌야 하는가?’

KISO는 2017년 8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임시조치 제도 어떻게 바뀌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로 참석한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현행 임시조치 제도와 개정안을 분석하여 발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신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가연 변호사(오픈넷), 오수진 선임연구원(한국소비자원), 한지혜 사무관(방송통신위원회),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나다순)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임시조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KISO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임시조치 제도의 보완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향후 인터넷 관련 법제도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KISO JOURNAL

## KISO저널, 온라인 전자서점과 콘텐츠 제휴

KISO는 지난 8월 국내 주요 온라인 전자서점 5개사(리디북스, 반디앤루니스, 북큐브, 알라딘, 예스24)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2009년 발행을 시작한 저널의 창간호부터 최근호인 제27호까지 게재를 완료하였다.

저널 구독층이 확대되고 저널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들이 여러 온라인 서점에서도 손쉽게 콘텐츠를 검색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KISO는 이번 온라인 전자서점 제휴를 통해 저널을 보다 널리 알리고 국내외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KISO JOURNAL

<KISO저널 제28호>

발행일 2017.9.29.

발행인 임지훈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신원디마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층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대표전화 02.6959.5206

대표메일 kiso@kiso.or.kr

홈페이지 www.kiso.or.kr

저널 홈페이지 journal.kiso.or.kr

◆ KISO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KISO저널 28호의 본문은 '한겨레결체'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563.4955)

<편집위원>

위원장/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권현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효섭 부장(네이버 경영지원실)

서승원 매니저(SK커뮤니케이션즈 사업협력실)

양현서 팀장(카카오 대외협력실)

윤혜선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태 박사(KISDI ICT전략연구실)

편집간사/고아라 책임연구원(KISO기획협력팀)



ISSN 2287-8866(Online)